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8

제출연월일 : 2006년 11월 13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이유

- 경제 특별도 건설의 조기실현을 위해 「경제투자본부」 위상강화와 지역간 불균형 해소 등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한 「균형발전본부」 신설과
- 살기좋은 농촌구현, 사회적 소외계층 복지향상과 여성의 위상강화, 참여하는 문화 등 민선4기 역점시책 전담기능을 보장하고
- 성과지향적 팀제도입, 유사기능의 통·폐합 등 새로운 조직환경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기구신설 및 명칭변경

○ 기구신설(8실·국·본부 ⇒ 9실·국·본부)

- 균형발전본부 신설

○ 명칭변경

- 기획관리실 ⇒ 정책관리실
- 경제통상국 ⇒ 경제투자본부
- 농정국 ⇒ 농정본부
- 건설교통국 ⇒ 건설재난관리본부
- 복지환경국 ⇒ 복지여성국
- 문화관광국 ⇒ 문화관광환경국
- 바이오산업추진단 ⇒ 생명산업추진단
- 건설종합본부 ⇒ 도로관리사업소

□ 분장사무 조정

○ 정무부지사

- 정책 및 기획의 수립 참여(신설)

○ 정책관리실

- 행정혁신 및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자치행정국에서 이관)
- 성과지표 및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신설)

○ 경제투자본부

- 재래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총괄·조정(신설)
- 공산품 품질관리 및 기업체 품질경영 활동 지원(신설)

○ 균형발전본부(신설)

- 국토이용계획·관리 및 토지수용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건설교통국에서 이관)
- 도시계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건설교통국에서 이관)
- 지역균형개발·발전에 관한 사항(건설교통국에서 이관)
-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관련한 광역도시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및 도심공동화 해소 사업에 관한 사항(신설)
- 공공기관 이전·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건설교통국에서 이관)
- 기업도시 건설·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건설교통국에서 이관)
- 교통·운수·자동차관리에 관한 사항(건설교통국에서 이관)
- 물류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신설)
- 주택건설종합계획 수립 및 주거환경개선(문화관광국에서 이관)
- 건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육성(문화관광국에서 이관)

○ 건설재난관리본부

- 국가기반보호에 관한 사항(자치행정국에서 이관)

○ 복지여성국

- 저출산·고령화대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 여성복지 정책 및 여성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신설)
- 영유아 보육·아동·청소년복지에 관한 종합기획 및 조정(신설)
- 건강가정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신설)

○ 문화관광환경국

-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복지환경국에서 이관)
- 자연보호,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복지환경국에서 이관)
- 환경오염 피해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복지환경국에서 이관)
- 대기·수질·토양·소음, 유독물 등의 환경시설관리 및 지도 단속에 관한 사항(복지환경국에서 이관)
- 물관리 종합기획 조정 및 수질관리(복지환경국에서 이관)
- 상·하수도 종합기획 조정(복지환경국에서 이관)
- 지하수 관리 및 댐주변 관리에 관한 사항(복지환경국에서 이관)
- 폐수 배출업소 및 축산폐수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복지환경국에서 이관)

○ 생명산업추진단

- 바이오농산단지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신설)

3. 의안전문 : 불 입

4. 신·구조문 대비표 : 불 입

5. 관계법령 발췌 : 불 입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1조 내지 제10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1조·제11조의2 및 제12조·제12조의2·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행정기구, 소속기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장·국장·본부장·담당관·과장·팀장 등 보조 및 보좌기관의 직급 등) 도 본청의 실장·국장·본부장·담당관·과장·팀장의 직급과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과·담당관·팀의 설치 등) 도본청·직속기관·사업소의 국(부)·과·담당관·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도 본청

제4조(부지사) ①도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 밑에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를 둔다.

②행정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도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다만, 정무부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2.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의 지휘·감독

③정무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도지사를 대리하여 정무적 행사·회의 참석에 관한 사항
2. 의회와 관련된 각종 정무적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정부·국회 등과 관련되는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정당·사회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도정의 홍보, 도지사의 활동상 소개 및 언론기관의 협조에 관한 사항
6. 도정에 대한 자문을 얻거나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사항
7. 정책 및 기획의 수립 참여
8. 기타 도지사를 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국·본부의 설치) 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정책관리실, 자치행정국, 경제투자본부, 균형발전본부, 농정본부, 건설재난관리본부, 복지여성국, 문화관광환경국, 소방본부를 둔다.

제6조(정책관리실) 정책관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정의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2. 국·도정 주요정책과제 심의·조정에 관한 사항
3. 광역조정에 관한 사항
4. 주요 행정시책의 확인 및 평가
5. 의회 및 교육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6. 행정혁신 및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
7. 성과지표 개발 및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8. 도 예산 편성 관리 및 시·군 재정 지도
9. 주요사업 투자심사 및 도·시군의 지방공기업 육성 지도
10. 조례·규칙의 심사·공포, 소송사건 및 법규의 편찬에 관한 사항
11. 각종 통계조사·분석 및 자료관리
12. 정보통신 및 행정전산화에 관한 사항

제7조(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의전, 행사, 보안, 기록물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인사, 교육고시, 복무 및 후생에 관한 사항
3. 자치행정 일반, 행정구역, 비상대책 및 여론동향에 관한 사항
4. 시·군행정 및 인사운영 지도·조정·협의를
5. 도·시군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6. 행정권한의 재배분 및 위임·위탁
7. 주민생활서비스 지원, 행정능률, 민원, 민간협력 및 선거사무에 관한 사항
8. 지방세, 세입관리, 세무지도, 재산관리와 기부금품모집 통제에 관한 사항
9. 예산의 지출·결산 등 회계업무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10. 민주화운동 등 과거사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제8조(경제투자본부) 경제투자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경제 종합기획 및 동향의 분석관리
2. 유통진흥, 소비자보호, 물가관리에 관한 사항
3. 재래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계획 수립·조정
4. 고용안정, 실업대책, 산업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5. 국제교류·협력, 통상진흥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시장개척 및 상품홍보 등에 관한 사항
7. 지역내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8. 기업육성 및 자금·기술·판매지원에 관한 사항
9. 기업인예우, 노사협력에 관한 사항
10. 지역산업의 진흥·개발·육성 등에 관한 사항
11. 광업, 에너지자원 관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12. 공산품 품질관리 및 기업체 품질경영 활동 지원
13. 지식정보산업 및 생물건강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14. 지방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항

제9조(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토이용계획·관리 및 토지수용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지역균형개발·발전에 관한 사항
4.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관련한 광역도시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및 도심공동화 해소 사업에 관한 사항
6. 공공기관 이전·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
7. 기업도시 건설·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
8. 교통·운수·자동차관리에 관한 사항
9. 물류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10. 주택건설종합계획 수립 및 주거환경개선
11. 건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육성

제10조(농정본부) 농정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정책 및 농어촌개발에 관한 사항

2. 농어촌발전 종합계획·조정·평가에 관한 사항
3. 농어민후계자 등 인력육성관리에 관한 사항
4. 농업생산의 종합 기획·조정
5. 농업소득 증진, 농촌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6. 농지의 보전·이용, 농지개량 및 수리에 관한 사항
7.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8. 농산·수산·축산·임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9. 식량작물생산 종합대책 추진
10. 양정·양곡관리 및 유통에 관한 사항
11. 잠엽, 특용작물, 채소, 과수 및 화훼에 관한 사항
12. 축산, 수산, 산림에 관한 사항
13. 산림의 보호와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14. 종자 생산·보급에 관한 사항

제11조(건설재난관리본부) 건설재난관리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업 면허 및 건설기술관리에 관한 사항
2. 도로사업의 종합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지방도, 시군도, 교량의 건설 및 시설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국도대체우회도로, 국가지원 지방도의 건설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안전관리, 재난관리, 재해예방대책, 재해조사 및 복구계획의 수립
6. 민방위·경보통제·국가기반보호에 관한 사항
7. 하천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8. 지적업무 및 토지관리의 종합기획·조정

제12조(복지여성국) 복지여성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
2. 저출산·고령화 대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여성복지 정책 및 여성권의 증진에 관한 사항
5. 건강가정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6. 영유아 보육·아동·청소년 복지에 관한 종합기획 및 조정
7. 경로복지, 장애인 복지 및 재활에 관한 사항

8. 화장장·묘지·매장 및 건전가정의례에 관한 사항
9. 보건, 의무, 약무, 방역, 정신재활 및 위생에 관한 사항

제13조(문화관광환경국) 문화관광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예술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문화재지정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술·종교단체에 관한 사항
4.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조정
5. 관광사업체 지도 육성 및 관광객 유치 홍보
6. 관광지개발 및 관리업무
7. 문화, 관광, 레포츠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8. 생활체육, 장애인 체육에 관한 사항
9.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11. 자연보호,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12. 환경오염 피해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13. 대기·수질·토양·소음·유독물 등의 환경시설관리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14. 물관리 종합기획 조정 및 수질관리
15. 상·하수도 종합기획 조정
16. 지하수 관리 및 댐주변 관리에 관한 사항
17. 폐수 배출업소 및 축산폐수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제14조(소방본부) 소방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행정의 기본운영계획 수립·조정
2. 소방공무원교육·인사 및 상벌에 관한 사항
3. 소방관서 설치 및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4. 화재의 예방·진압 및 원인분석에 관한 사항
5. 구조·구급 활동에 관한 사항

제3장 직 속 기 관

제1절 충북과학대학

제15조(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사회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충청과학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대학은 충청북도 옥천군 관내에 둔다.

제16조(학장) 대학에 학장을 두고, 학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 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을 대표한다.

제17조(운영조례 및 학칙) ①대학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②대학에 설치하는 학과, 학생정원 및 학사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2절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제18조(설치) ①「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과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자치연수원(이하"연수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연수원은 충청북도 청원군 관내에 둔다.

제19조(원장) 연수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0조(소관사무) 연수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도민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도정 시책 교육에 관한 사항

제21조(운영) 연수원의 교육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절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제22조(설치) ①「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의 농업발전과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농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술원은 충청북도 청원군 관내에 둔다.

제23조(원장) 기술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4조(소관사무) 기술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농업과학기술의 개발을 위한 시험 연구
2. 농산물의 우량품종 육성 선발과 우량종자의 생산
3. 농업환경에 관한 시험, 농산물 저장 및 가공이용 연구
4. 농업경영, 농업정보에 관한 조사 및 분석·연구
5. 식량, 원예, 잠업, 특용작물 및 축산에 관한 농업과학기술 보급
6. 농업환경 보전과 기상재해 대비 기술지도
7. 농업인 단체의 조직 및 육성
8. 영농기술 보급을 위한 교육 및 농기계 훈련
9. 우량 잠종·상묘의 생산과 시험 검사 및 잠견검사용 기계운용 관리
10. 중앙정부의 관련 시험연구기관과의 지역적인 연락 시험연구에 관한 사항
11. 농촌생활 개선지도
12. 농업발전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 기술·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25조(특화작목연구소 등) ①기술원에 충청북도 특화작목의 품종개량, 재배방법 개선, 생리 생태, 저장 및 가공이용 등과 기타 소득작물에 관한 시험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포도연구소, 마늘연구소, 시설농업연구소를 둔다.

②기술원에 잠종의 개발보급을 위하여 잠사시험장을 둔다.

③특화작목연구소, 잠사시험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절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제26조(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 및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연구원은 충청북도 청주시 관내에 둔다.

제27조(원장) 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8조(소관사무) 연구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급·만성 전염병 진단,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
2. 환경측정망 운영 및 환경오염물질·먹는물 검사에 관한 사항
3. 지역환경 및 주민보건위생에 관한 시험·조사·연구사업에 관한 사항
4. 기타 보건환경연구원 및 설치목적 달성을 위한 시험·검사·연구에 관한 사항

제5절 소 방 서

제29조(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 관할구역안에 소방서를 설치한다.

②소방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30조(서장) 소방서에 서장을 두고, 서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1조(소관사무) 소방서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화재의 예방과 진압에 관한 사항
2. 화재원인의 조사, 분석 및 통계에 관한 사항
3. 위험물·소방시설의 기준 점검 및 소방시설공사업 등에 관한 사항
4. 구조구급 및 특수재해의 소방활동에 관한 사항
5. 소방장비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의용소방대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제32조(119안전센터 등) 소방서의 소관사항 분장을 위하여 119안전센터 및 구조대를 둘 수 있으며, 119안전센터와 구조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사 업 소

제1절 충청북도생명산업추진단

제33조(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내에서 추진되는 생명산업 추진의 원활한 추진 및 운영관리를 위하여 충청북도생명산업추진단(이하“생명산업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생명산업추진단은 충청북도 청주시 관내에 둔다.

제34조(단장) 생명산업추진단에 단장을 두고, 단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5조(소관사무)생명산업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생명산업추진 기획홍보 및 행정지원
2. 바이오엑스포 상징물 이전 및 전시관·홍보교육관 건립운영

3. 바이오 국제학술회의 및 바이오이벤트 기념사업
4. 생명과학단지 조성 및 지원시설에 관한 사항
5. 생명과학단지내 국책기관 및 연구시설, 대학 등 유치에 관한 사항
6. 밀레니엄타운 조성공사
7. 밀레니엄타운 사업자 선정 및 민자유치
8. 오송신도시건설 기본계획·실시계획 수립
9. 오송신도시건설 기반시설 확충 및 조성
10. 바이오농산단지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제2절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

제36조(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 유지보수의 원활한 수행과 중장비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이하 “도로관리사업소” 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도로관리사업소는 충청북도 청주시 관내에 둔다.

제37조(소장) 도로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8조(소관사무) 도로관리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도로사업의 조사, 연구, 실험, 측량, 설계, 시행 및 공사감독
2. 도로포장 시행과 도로유지 보수관리
3. 교량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관리
4. 운행제한(과적)차량 지도단속
5. 건설공사 품질시험 및 검사
6. 중장비 운영 및 대여 관리
7. 중장비 부속품, 도로유지보수자재 등의 물품수급 및 저장관리

제39조(지소) 도로관리사업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 그 분장사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절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

제40조(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환경에 관한 시험연구, 도유림

의 경영과 보호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이하 "산림환경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산림환경연구소는 충청북도 청원군 관내에 둔다.

제41조(소장) 산림환경연구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2조(소관사무) 산림환경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임업 및 산림환경에 관한 연구
2. 우량묘목의 생산과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의 조림 및 보호
3. 도유림의 경영 및 보호관리
4. 임산물 및 임업에 관한 시험 검정
5. 사방사업 설계 및 시공
6. 산사태 예방 및 복구
7. 휴양림 조성 관리
8. 자연학습 및 자연보호에 관한 교육
9. 자연보호에 관련한 도민연수에 관한 사항
10. 임업발전에 필요한 사항의 시험 연구

제4절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

제43조(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의 검사와 분석, 가축질병의 방역과 검정, 가축개량 및 보급 관련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 (이하 "축산위생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축산위생연구소는 충청북도 청원군 관내에 둔다.

제44조(소장) 축산위생연구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5조(소관사무) 축산위생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축산물의 검사·분석과 가축질병의 방역 및 검정
2. 축산위생에 필요한 검사·시험연구
3. 가축의 개량 및 우량종축의 보급
4. 축산 및 사료에 관한 시험 연구

제46조(지소) 축산위생연구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 그 분장 사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절 충청북도농산사업소

제47조(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 원종 및 보급종의 생산·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농산사업소(이하 "농산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농산사업소는 충청북도 진천군 관내에 둔다.

제48조(소장) 농산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농산사업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9조(소관사무) 농산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농산물 원종생산 및 품종개량에 관한 사항
2. 농산물 우량종자 생산·보급에 관한 사항

제6절 충청북도청남대관리사업소

제50조(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남대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 관리를 위하여 충청북도청남대관리사업소(이하 "청남대관리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청남대관리사업소는 충청북도 청원군 관내에 둔다.

제51조(소장) 청남대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2조(소관사무)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주변환경 보전 및 관광 명소화 사업 추진
2. 청남대 시설 유지관리
3. 관광홍보·안내
4. 주변지역 민원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절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제53조(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여성들에게 사회교육을 통해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활동의 영역을 확대하여 지방화, 정보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기능적

인 여성공동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이하 "여성발전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여성발전센터는 충청북도 청주시 관내에 둔다.

제54조(소장) 여성발전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5조(소관사무) 여성발전센터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여성사회교육 활성화를 위한 여건 및 기반조성
2. 여성사회교육 및 역량강화 교육 실시
3. 여성발전 연구개발 및 여성정보자료실 운영
4. 여성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8절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

제56조(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수어 양식에 관한 시험연구와 내수면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이하 "내수면연구소"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내수면연구소는 충청북도 청주시 관내에 둔다.

제57조(소장) 내수면연구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8조(소관사무) 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담수어 양식에 관한 시험 연구
2. 담수어 치어생산 보급 및 희귀어종 양식
3. 지역 특성어종 양식기술 개발 보급
4. 양어기술 교육 및 기술이전
5. 기타 담수어 양식에 필요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정책관리실 혁신담당관실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자치행정국 노근리사건 실무지원단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균형발전본부 신도시건설팀은 2008년 10월 30일까지로, 충청북도생명산업추진단은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와 관련된 부서명칭은 규칙으로 정하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통·폐합·분리 및 변경된 부서의 명칭은 업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충청북도환경분쟁조정예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복지환경국장”을 “문화관광환경국장”으로 한다.

②충청북도바이오농업·농기업육성지원예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농정국장”을 “농정본부장”으로 한다.

③충청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중 “복지환경국장, 농정국장, 건설교통국장”을 “균형발전본부장, 농정본부장, 문화관광환경국장”으로 한다.

④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기획관리실장”을 “정책관리실장”으로, “주무 실·국장”을 “주무 실·국·본부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각 실·국장”을 “각 실·국·본부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중 “기획관리실”을 “정책관리실”로 한다.

⑤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예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기획관리실장”을 “정책관리실장”으로 한다.

⑥충청북도명예연구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중 “실·국”을 “실·국·본부”로 한다.

⑦충청북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업무담당과장”을 “업무담당과·팀장”으로 한다.

⑧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예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중 “경제통상국장”을 “경제투자본부장”으로 하고, 동조동항제1호중 “실·과장”을 “실·과·팀장”으로 한다.

⑨충청북도상징물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기획관리실장”을 “정책관리실장”으로 한다.

- ⑩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경제통상국장”을 “경제투자본부장”으로 한다.
- ⑪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중 “경제통상국장”을 “경제투자본부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사업담당국장”을 “사업담당국·본부장”으로 하고, “사업담당과장”을 “사업담당과·팀장”으로 한다.
- ⑫ 충청북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중 “업무담당국장”을 “업무담당국·본부장”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업무담당과장”을 “업무담당과·팀장”으로 한다.
- ⑬ 충청북도기업및외자유치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중 “실·국장”을 “실·국·본부장”으로 한다.
- ⑭ 충청북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업무담당국장”을 “업무담당국·본부장”으로 하고, “업무담당과장”을 “업무담당과·팀장”으로 한다.
- ⑮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중 “경제통상국장”을 “경제투자본부장”으로 한다.
- ⑯ 충청북도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문화관광국장”을 “균형발전본부장”으로 한다.
- ⑰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실·국장”을 “실·국·본부장”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중 “실국장급”을 “실·국·본부장급”으로 한다.
- ⑱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재난관리본부장”으로 하고, “지역개발과장”을 “건설기술심의업무담당과·팀장”으로 한다.
- ⑲ 충청북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기획관리실장”을 “정책관리실장”으로 한다.
- ⑳ 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기획관리실장”을 “정책관리실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중 “복지환경국장, 문화관광국장, 여성정책관”을 “복지여성국장, 문화관광환경국장”으로 한다.

- ㉑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중 “기획관리실장”을 “정책관리실장”으로 한다.
- ㉒ 충청북도세정보전금배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중 “기획관리실장”을 “정책관리실장”으로 한다.
- ㉓ 충청북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기획관리실장”을 “정책관리실장”으로 한다.
- ㉔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기획관리실장”을 “정책관리실장”으로 한다.
- ㉕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기획관리실장”을 “정책관리실장”으로 한다.
- ㉖ 충청북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재난업무담당과장”을 “재난업무담당과·팀장”으로 한다.
- ㉗ 충청북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중 “기획관리실장 및 여성정책관”을 “정책관리실장 및 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중 “여성정책관”을 “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 ㉘ 충청북도 재해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재난관리본부장”으로 한다.
- ㉙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중 “국장”을 “국·본부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과장”을 “과·팀장”으로 한다.
- ㉚ 충청북도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담당국장과 과장”을 “담당국·본부장과 과·팀장”으로 한다.
- ㉛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기획관리실장”을 “정책관리실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건설교통국장”을 “균형발전본부장”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중 “과의 과장”을 “과·팀의 과·팀장”으로 한다.
- ㉜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 ③ 충청북도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 ④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 ⑤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사회복지업무담당과장”을 “장애인복지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 ⑥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 ⑦ 충청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5조제2항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 ⑧ 충청북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여성국장”을 한다.
- ⑨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 ⑩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15조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관광환경국장”으로 한다.
- ⑪ 충청북도지편찬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기획관리실장”을 “정책관리실장”으로 한다.
- ⑫ 충청북도 사전제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국장”을 “국·본부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과장”을 “과·팀장”으로 한다.
- ⑬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기획관리실장”을 “정책관리실장”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국장”을 “국·본부장”으로 한다.
- ⑭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제8조제3항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재난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8조제4항중 “과장”을 “과·팀장”으로 한다.

- ④⑤ 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건설교통국장”을 “균형발전본부장”으로 한다.
- ④⑥ 충청북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 ④⑦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기획관리실장, 경제통상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을 “정책관리실장, 경제투자본부장, 균형발전본부장, 문화관광환경국장”으로 한다.
- ④⑧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4항, 제5조중 “바이오산업추진단장, 건설종합본부장”을 “생명산업추진단장, 도로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
별표 4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일련번호 제5호 및 제6호 위임대상기관란의 “바이오산업추진단장, 건설종합본부장”을 “생명산업추진단장, 도로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
- ④⑨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문화관광국장”을 “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 ⑤⑩ 충청북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실·국장, 담당관, 실·과장급”을 “실·국·본부장, 담당관, 실·과·팀장급”으로 한다.
- ⑤⑪ 충북과학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기획관리실장”을 “정책관리실장”으로 한다.
- ⑤⑫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경제통상국장·농정국장·건설교통국장”을 “균형발전본부장·농정본부장·건설재난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중 “복지환경국장·문화관광국장·여성정책관”을 “복지여성국장·문화관광환경국장”으로 한다.
- ⑤⑬ 충청북도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충청북도건설종합본부(이하 “건설본부”라 한다)”를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이하 “도로관리사업소”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3조, 제5조, 제7조,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

항·제2항·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제4항, 제14조제1항·제2항·제3항, 제16조,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제1호, 제19조제1항, 제20조중 “건설본부장”을 “도로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5조제2항중 “건설본부”를 “도로관리사업소”로 한다.

별표 1 중 “충청북도건설종합본부장”을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중 “충청북도건설종합본부장”을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

[별표 1]

농업기술원 특화작목연구소 · 잠사시험장 명칭과 위치

명 칭	위 치
포도 연구소	옥천군 관내
마늘 연구소	단양군 관내
시설농업연구소	음성군 관내
잠 사 시 험 장	청주시 관내

[별표 2]

소방서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충청북도 청주동부소방서	청주시 관 내	청주시 상당구, 청원군중 내수읍, 북이면, 남일면, 가덕면, 문의면, 낭성면, 미월면, 오창면 일원, 보은군 일원
충청북도 청주서부소방서	청주시 관 내	청주시 흥덕구, 청원군중 옥산면, 강내면, 강외면, 남이면, 부용면, 현도면 일원
충청북도 충주소방서	충주시 관 내	충주시 일원
충청북도 제천소방서	제천시 관 내	제천시, 단양군 일원
충청북도 영동소방서	영동군 관 내	영동군, 옥천군 일원
충청북도 증평소방서	증평군 관 내	증평군, 괴산군 일원
충청북도 진천소방서	진천군 관 내	진천군 일원
충청북도 음성소방서	음성군 관 내	음성군 일원

신·구조문대비표

□ 충청북도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2조(위원회 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지사, 부위원장은 <u>복지환경국장</u> 으로 한다. ②~④(생략)	제2조(위원회 구성)①..... <u>문화관광환경국장</u> ②~④(현행과 같음)

□ 충청북도바이오농업·농기업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6조(구성)①(생략) ②당연직 위원은 <u>농정국장</u> 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바이오농업 관련 유관기관에 종사하는 자,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생략)	제6조(구성)①(현행과 같음) ②..... <u>농정보부장</u> ③(현행과 같음)

□ 충청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현행	개정안
제3조(구성)①~②(생략) ③위원은 다음 각호로 하고 도지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당연직위원 : <u>복지환경국장, 농정국장, 건설교통국장</u> 2.(생략)	제3조(구성)①~②(현행과 같음) ③..... 1..... <u>균형발전본부장, 농정보부장, 문화관광환경국장</u> 2.(현행과 같음)

□ 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p>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p> <p>①(생략)</p> <p>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중 1인은 도 기획관리실장이 되며 나머지 3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1. ~3.(생략)</p> <p>③(생략)</p>	<p>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p> <p>①(현행과 같음)</p> <p>②.....<u>정책관리실장</u>.....</p> <p>1. ~3.(현행과 같음)</p> <p>③(현행과 같음)</p>

□ 충청북도 명예연구소운영조례

현행	개정안
<p>제5조(지정)①(생략)</p> <p>②기획관실에서는 관련 실·국의 사전검토와 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연구소를 지정하였을 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정패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현판을 교부한다.</p> <p>제6조(행·재정적 지원)지정된 명예연구소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하되, 총괄업무는 기획관실에서 담당하고 세부지원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실·국에서 주관한다.</p> <p>1.~ 5.(생략)</p>	<p>제5조(지정)①(현행과 같음)</p> <p>②.....<u>실·국·본부</u>.....</p> <p>제6조(행·재정적 지원).....<u>실·국·본부</u>.....</p> <p>1.~ 5.(현행과 같음)</p>

□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 조례

현행	개정안
<p>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생략)</p> <p>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u>업무담당과</u>장으로 한다.</p>	<p>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현행과 같음)</p> <p>②..... <u>업무담당과</u> · 팀장</p>

□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p>제15조(협의회의 구성 등)①~③(생략)</p> <p>④위원장은 <u>경제통상국장</u>이 되고 위원은 해당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전문가를 선임하고 수시로 개최한다.</p> <p>1.도의 기업지원관련 <u>실·과장</u>, 시군의 국·실·과장</p> <p>2. ~ 3.(생략)</p> <p>⑤(생략)</p>	<p>제15조(협의회의 구성 등)①~③(현행과 같음)</p> <p>④..... <u>경제투자본부장</u>.....</p> <p>.....</p> <p>1..... <u>실·과·팀장</u>.....</p> <p>.....</p> <p>2. ~ 3.(현행과 같음)</p> <p>⑤(현행과 같음)</p>

□ 충청북도상징물관리조례

현행	개정안
<p>제10조(상징물관리위원회설치·운영) ①~②(생략)</p> <p>③위원장은 <u>기획관리실장</u>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④~⑤(생략)</p>	<p>제10조(상징물관리위원회설치·운영) ①~②(현행과 같음)</p> <p>③..... <u>정책관리실장</u>.....</p> <p>.....</p> <p>④~⑤(현행과 같음)</p>

□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조례

현행	개정안
<p>제4조(위원회 설치)①(생략)</p> <p>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u>경제통상국장</u>이 된다.</p> <p>③~④(생략)</p>	<p>제4조(위원회 설치)①(현행과 같음)</p> <p>②.....</p> <p>.....</p> <p>.....<u>경제투자본부장</u>.....</p> <p>③~④(현행과 같음)</p>

□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

현행	개정안
<p>제13조(융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②(생략)</p> <p>③위원장은 <u>경제통상국장</u>이 되고 부위원장은 <u>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u>이 된다.</p> <p>④~⑦(생략)</p>	<p>제13조(융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②(현행과 같음)</p> <p>③.....<u>경제투자본부장</u>.....</p> <p>.....</p> <p>④~⑦(현행과 같음)</p>
<p>제19조(기금관리 공무원)①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u>사업담당국장</u>을 기금운용관으로, <u>사업담당과장</u>을 기금분임운용관으로, 담당사무관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p> <p>②(생략)</p>	<p>제19조(기금관리 공무원)①.....</p> <p>.....<u>사업담당국</u>·<u>본부장</u>.....<u>사업담당과</u>·<u>팀장</u>.....</p> <p>.....</p> <p>②(현행과 같음)</p>

□ 충청북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운용관리조례

현행	개정안
제5조(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①(생략) ②특별회계 운용을 위한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과 같다. 1.징수관·경리관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u>업무담당국장</u> 2.분임징수관·분임경리관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u>업무담당과장</u> 3. (생략)	제5조(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①(현행과 같음) ②특별회계 운용을 위한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과 같다. 1. <u>업무담당국·본부장</u> 2. <u>업무담당과·팀장</u> 3. (현행과 같음)

□ 충청북도기업및외자유치등에관한조례

현행	개정안
제5조(구성·운영 등)①(생략)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투자유치 업무 관련 <u>실·국장</u> 2.~5. (생략) ③ ~ ⑦(생략)	제5조(구성·운영 등)①(현행과 같음) ②..... 1..... <u>실·국·본부장</u> 2.~5. (현행과 같음) ③ ~ ⑦(현행과 같음)

□ 충청북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

현행	개정안
<p>제2조(회계관계공무원)충청북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p> <p>1. 도 가.징수관 : 부담금 업무담당국장 나.분임징수관 : 부담금 업무담당과장</p> <p>2. (생략)</p>	<p>제2조(회계관계공무원).....</p> <p>.....</p> <p>.....</p> <p>1. 도 가.....업무담당국·본부장 나.....업무담당과·팀장</p> <p>2. (현행과 같음)</p>

□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현행	개정안
<p>제8조(분과위원회)① ~ ②(생략)</p> <p>③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통상국장이 되고 분과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장 등이 추천한 실무급 인사와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p> <p>④~⑤(생략)</p>	<p>제8조(분과위원회)① ~ ②(현행과 같음)</p> <p>③.....경제투자본부장.....</p> <p>.....</p> <p>.....</p> <p>.....</p> <p>④~⑤(현행과 같음)</p>

□ 충청북도 건축 조례

현행	개정안
<p>제4조(구성)①(생략)</p> <p>②위원장은 문화관광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p> <p>③~④(생략)</p>	<p>제4조(구성)①(현행과 같음)</p> <p>②.....균형발전본부장.....</p> <p>.....</p> <p>③~④(현행과 같음)</p>

□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현행	개정안
<p>제7조(지역정보화협의회)①~②(생략)</p> <p>③협의회장은 도지사가 되며, 회원은 지역내 유관기관·기업체·학계·언론·금융·민간단체 등의 장, 도의회 의원, 시장·군수, 관할 지방채신청장, 업무관련 <u>실·국장</u> 중에서 협의회장이 임명·위촉하는 자로 한다.</p> <p>④~⑥(생략)</p> <p>제9조의2(정보화책임관)①도지사는 지역정보화의 촉진을 위하여 정보화책임관을 둘 수 있으며, 정보화책임관은 각종 정책과 정보화와의 연계를 종합 조정할 수 있는 <u>실국장급</u>이상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p> <p>②(생략)</p> <p>③(생략)</p>	<p>제7조(지역정보화협의회)①~②(현행과 같음)</p> <p>③.....</p> <p>.....</p> <p>.....</p> <p>..... <u>실·국·본부장</u>.....</p> <p>.....</p> <p>④~⑥(현행과 같음)</p> <p>제9조의2(정보화책임관)①.....</p> <p>.....</p> <p>.....</p> <p>..... <u>실·국·본부장급</u>.....</p> <p>.....</p> <p>②(현행과 같음)</p> <p>③(현행과 같음)</p>

□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현행	개정안
<p>제2조(구성)①(생략)</p> <p>②위원장은 <u>건설교통국장</u>이 되고, 부위원장은 <u>지역개발과장</u>이 된다.</p> <p>③~④(생략)</p> <p>제5조(간사 및 서기)①(생략)</p> <p>②간사는 도본청 건설기술심의 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u>과의</u> 업무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기술심의 업무담당자로 한다.</p>	<p>제4조(구성)①(현행과 같음)</p> <p>②..... <u>건설재난관리본부장</u>.....<u>건설기술심의업무담당과·팀장</u>.....</p> <p>③~④(현행과 같음)</p> <p>제5조(간사 및 서기)①(현행과 같음)</p> <p>②..... <u>과·팀의</u>.....</p> <p>.....</p>

□ 충청북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6조(기금관리공무원)①(생략) ②기금운용관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지방채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③~④(생략)	제6조(기금관리공무원)①(현행과 같음) ②..... <u>정책관리실장</u> ③~④(현행과 같음)

□ 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위원회 구성)①(생략) 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 1인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1인은 위촉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한다. 1. 당연직 위원 : 자치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문화관광국장, 여성정책관 2. (생략) ④~⑤(생략)	제10조(위원회 구성)①(현행과 같음) ②..... <u>정책관리실장</u> ③..... 1.복지여성국장, 문화관광환경국장 2. (현행과 같음) ④~⑤(현행과 같음)

□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도지사는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관리관 : <u>기획관리실장</u> 2. ~3.(생략)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1. : <u>정책관리실장</u> 2. ~3.(현행과 같음)

□ 충청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

현행	개정안
제7조(재정보전금의 배분시기 및 통지) ①~③(생략) ④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반재정보전금은 자치행정국장이, 시책추진보전금은 기획관리실장이 관장한다.	제7조(재정보전금의 배분시기 및 통지) ①~③(현행과 같음) ④.....정책관리실장.....

□ 충청북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제2조(구성)①(생략) 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된다 ③~④(생략)	제2조(구성)①(현행과 같음) ②.....정책관리실장..... ③~④(현행과 같음)

□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현행	개정안
제3조(관리자의 지정)①(생략) ②관리자는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제3조(관리자의 지정)①(현행과 같음) ②.....정책관리실장.....

□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현행	개정안
제2조(구성)①(생략) 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된다 ③~④(생략)	제2조(구성)①(현행과 같음) ②.....정책관리실장..... ③~④(현행과 같음)

□ 충청북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12조(간사와 서기)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u>재난업무담당과장</u> 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담당이 된다.	제12조(간사와 서기)..... <u>재난업무담당과 · 팀장</u>

□ 충청북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현행	개정안
제25조(구성 및 임기)①~②(생략) ③위원은 여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위촉한다. 다만, <u>기획관리실장</u> 및 <u>여성정책관</u> 과 충청북도의회의장이 추천하는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 2인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⑤(생략) 제37조(회계공무원)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u>여성정책관</u> 으로, 기금출납원은 여성정책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②(생략)	제25조(구성 및 임기)①~②(현행과 같음) ③..... <u>정책관리실장</u> 및 <u>복지여성국장</u> ④~⑤(현행과 같음) 제37조(회계공무원)①..... <u>복지여성국장</u> ②(현행과 같음)

□ 충청북도 재해영향평가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충청북도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의회의 구성)①(생략) ②위원장은 <u>건설교통국</u> 장이 된다 ③~⑦(생략)	제12조(충청북도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의회의 구성)①(현행과 같음) ②..... <u>건설재난관리본부장</u> ③~⑦(현행과 같음)

□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위원회는 위 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 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생략) 2. 재난관리업무 담당 <u>국장</u> 및 소방본 부장 3. ~ 8.(생략) ② (생략)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 무를 담당하는 <u>과장</u> 이 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1.(현행과 같음) 2. <u>국·본부장</u> 3. ~ 8.(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u>과·팀장</u>

□ 충청북도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

현행	개정안
<p>제2조(지방재해대책본부의 운영)①(생략)</p> <p>②통제관과 담당관은 각각 자연재해 대책업무 담당국장과 과장이 되고, 실무반은 도관련 공무원과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자 등으로 한다.</p>	<p>제2조(지방재해대책본부의 운영)①(현행과 같음)</p> <p>②.....</p> <p>.....<u>담당국·본부장과 과·팀장</u>.....</p> <p>.....</p> <p>.....</p> <p>.....</p>

□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현행	개정안
<p>제8조(구성)①(생략)</p> <p>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u>기획관리실장</u>으로 한다.</p> <p>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u>건설교통국장</u>으로 한다.</p> <p>④~⑤(생략)</p>	<p>제8조(구성)①(현행과 같음)</p> <p>②.....</p> <p>.....<u>정책관리실장</u>.....</p> <p>.....</p> <p>③.....<u>균형발전본부장</u>.....</p> <p>④~⑤(현행과 같음)</p>
<p>제16조(간사 및 서기)①(생략)</p> <p>②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u>과의 과장</u>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p> <p>③(생략)</p>	<p>제16조(간사 및 서기)①(현행과 같음)</p> <p>②.....<u>과·팀의 과·팀장</u>.....</p> <p>.....</p> <p>③(현행과 같음)</p>

□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현행	개정안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②(생략) ③위원장은 <u>복지환경국장</u> , 부위원장은 사회복지과장이 되고 위원은 복지관 련 전문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중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생략)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②(현행과 같음) ③..... <u>복지여성국장</u> ④(현행과 같음)

□ 충청북도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현행	개정안
제6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도지사는 기금출납을 위하여 기금담당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담당관은 <u>복 지환경국장</u> 으로, 기금출납원은 기초생 활보장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6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u>복지여 성국장</u>

□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제3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 하로 구성하며, 행정부지사, <u>복지환경 국장</u> 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②~③(생략)	제3조(구성)①..... <u>복지여성국장</u> ②~③(현행과 같음)

□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8조(간사 및 서기)①(생략) ②간사는 <u>사회복지업무담당과장</u> 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③~④(생략)	제8조(간사 및 서기)①(현행과 같음) ②..... <u>장애인복지업무담당과장</u> ③~④(현행과 같음)

□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현행	개정안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①(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u>복지환경국장</u> 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초생활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①(현행과 같음) ②..... <u>복지여성국장</u>

□ 충청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현행	개정안
제3조(기금의 관리·운용)①(생략) ②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u>복지환경국장</u> 을 기금출납명령관으로, 위생관리담당사무관을 기금출납공무원으로 본다 ③(생략)	제3조(기금의 관리·운용)①(현행과 같음) ②..... <u>복지여성국장</u> ③(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생략) ②위원장은 <u>복지환경국장</u> 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⑤(생략)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현행과 같음) ②..... <u>복지여성국장</u> ③~⑤(현행과 같음)

□ 충청북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①(생략) 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u>복지환경국장</u> 으로 한다. ③(생략)	제2조(구성)①(현행과 같음) ②..... <u>복지여성국장</u> ③(현행과 같음)

□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①(생략) 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u>복지환경국장</u> 으로 한다. ③(생략)	제2조(구성)①(현행과 같음) ②..... <u>복지여성국장</u> ③(현행과 같음)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등)①~②(생략) ③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u>문화관광국장</u> ,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은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생략)	제3조(구성 등)①~②(현행과 같음) ③..... <u>문화관광환경국장</u> ④(현행과 같음)
제15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임명)도지사는 기금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되 기금운용관은 <u>문화관광국장</u> 으로, 기금출납원은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제15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임명)..... <u>문화관광환경국장</u>

□ 충청북도지편찬위원회조례

현행	개정안
<p>제2조(구성)①(생략)</p> <p>②위원장은 충청북도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p> <p>③~④(생략)</p>	<p>제2조(구성)①(현행과 같음)</p> <p>②.....<u>정책관리실장</u>.....</p> <p>③~④(현행과 같음)</p>

□ 충청북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p>제2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①(생략)</p> <p>②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u>국장</u>으로 한다.</p> <p>③(생략)</p>	<p>제2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①(현행과 같음)</p> <p>②.....<u>국·본부장</u>.....</p> <p>③(현행과 같음)</p>
<p>제12조(간사)①(생략)</p> <p>②간사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u>과장</u>이 된다.</p> <p>③(생략)</p>	<p>제12조(간사)①(현행과 같음)</p> <p>②.....<u>과·팀장</u>.....</p> <p>③(현행과 같음)</p>

□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②(생략) ③상황실은 실장과 분야별 지원반으 로 구성하되, 실장은 <u>기획관리실장</u> 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위한다. ④(생략) ⑤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 과 관련한 <u>국장급</u> 공무원 또는 기 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⑥(생략)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②(현행과 같음) ③..... <u>정책관리실장</u> ④(현행과 같음) ⑤..... <u>국·본부장</u> ⑥(현행과 같음)

□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7조(회계공무원)①기금의 효율적으 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 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u>건설교통국장</u> 2. (생략) ②(생략)	제7조(회계공무원)①..... 1. : <u>건설재난관리본부장</u> 2. (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①~②(생 략)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u>건설교통국장</u> 이 된다. ④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예산, 사회복지, 민방위, 재난관리 분야를 담당하는 <u>과장</u> 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로 한다. ⑤~⑥(생략)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①~②(현 행과 같음) ③..... <u>건설재난관리본부장</u> ④..... <u>과·팀장</u> ⑤~⑥(현행과 같음)

□ 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

현행	개정안
제2조(구성)①(생략) 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된다. ③(생략)	제2조(구성)①(현행과 같음) ②..... <u>균형발전본부장</u> ③(현행과 같음)

□ 충청북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현행	개정안
제3조(구성)①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인 충청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를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행정부지사·자치행정국장· <u>복지환경국장</u> 2.~3.(생략) ②(생략)	제3조(구성)①..... 1. <u>복지여성국장</u> 2.~3.(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현행	개정안
제3조(구성)①(생략) ②위원회의 당연직위원(5인)은 기획관리실장, 자치행정국장, <u>경제통상국장</u> , <u>복지환경국장</u> , <u>건설교통국장</u> 으로 한다. ③~⑤(생략)	제3조(구성)①(현행과 같음) ②..... <u>정책관리실장</u> , <u>경제투자본부장</u> , <u>균형발전본부장</u> , <u>문화관광환경국장</u> ③~⑤(현행과 같음)

□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중 시장, 군수, 충청북도의회사무처장, 소방서장 및 충북과학대학장, 자치연수원장, 농업기술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u>바이오산업추진단장</u>, <u>건설종합본부장</u>, 산림환경연구소장, 축산위생연구소장, 농산사업소장, 청남대관리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사무를 정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u>생명산업추진단장</u>, <u>도로관리사업소장</u>.....</p>
<p>제2조(권한위임사항)①~③ (생략)</p> <p>④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중 충북과학대학장, 자치연수원장, 농업기술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u>바이오산업추진단장</u>, <u>건설종합본부장</u>, 산림환경연구소장, 축산위생연구소장, 농산사업소장, 청남대관리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4와 같다.</p> <p>⑤~⑥ (생략)</p>	<p>제2조(권한위임사항)①~③(현행과 같음)</p> <p>④.....<u>생명산업추진단장</u>, <u>도로관리사업소장</u>.....</p> <p>⑤~⑥ (현행과 같음)</p>
<p>제5조(위임처리 금지)시장, 군수, 충청북도의회사무처장, 소방서장 및 충북과학대학장, 자치연수원장, 농업기술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u>바이오산업추진단장</u>, <u>건설종합본부장</u>, 산림환경연구소장, 축산위생연구소장, 농산사업소장,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하부기관에 위임 처리할 수 없다</p>	<p>제5조(위임처리 금지).....<u>생명산업추진단장</u>, <u>도로관리사업소장</u>.....</p>

현행					개정안				
[별표]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별표]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대상실과	일련번호	사무명	위임대상기관	근거법령	대상실과	일련번호	사무명	위임대상기관	근거법령
총무과	1~4	(생략)			총무과	1~4	(생략)		
	5	(생략)	바이오산업추진단장			5	(생략)	생명산업추진단장	
	6	(생략)	건설종합본부장			6	(생략)	도로관리사업소장	
	7~10	(생략)				7~10	(생략)		

□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현행		개정안	
제9조(실무위원회 구성)①(생략) ②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문화관광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실무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생략)		제9조(실무위원회 구성)①(현행과 같음) ②.....복지여성국장 ③(현행과 같음)	

□ 충청북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현행		개정안	
제2조(범위)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2.(생략) 3.도지사 및 교육감의 보조기관중 실·국장, 담당관, 실·과장급 4.~7.(생략)		제2조(범위)..... 1.~2.(현행과 같음) 3..... 실·국·본부장, 담당관, 실·과·팀장급 4.~7.(현행과 같음)	

□ 충청북도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

현행	개정안
<p>제2조(건설기계운영관리)</p> <p>①건설기계는 <u>충청북도건설종합본부</u> (이하“<u>건설본부</u>”라 한다)에서 집중 관리하고 <u>건설본부장</u> 책임하에 운영·관리한다.</p> <p>②<u>건설본부장</u>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차인에게 분산 보관케 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제2조(건설기계운영관리)</p> <p>①……………<u>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u> (이하“<u>도로관리사업소</u>”라 한다)…………… ……………<u>도로관리사업소장</u>…………… ……………</p> <p>②<u>도로관리사업소장</u>…………… ……………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3조(건설기계기술검사 및 정비 등)</p> <p><u>건설본부장</u>은 건설기계의 구조 및 성능유지를 위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검사와 예방정비 점검수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p>	<p>제3조(건설기계기술검사 및 정비 등)</p> <p><u>도로관리사업소장</u>…………… …………… …………… ……………</p>
<p>제4조(건설기계사용)건설기계는 <u>건설본부</u>가 시행하는 도로유지 보수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응급 복구등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p>	<p>제4조(건설기계사용)……………<u>도로관리사업소</u>…………… …………… …………… ……………</p>

현행	개정안
<p>제5조(건설기계투입계획수립)건설본부장은 매년도 3월말까지 <u>건설본부가</u> 시행하는 도로유지보수에 대한 건설기계투입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p>	<p>제5조(건설기계투입계획수립)<u>도로관리사업소장</u>.....<u>도로관리사업소</u>.....</p>
<p>제6조(건설기계사용 설계)건설본부가 시행하는 도로유지 보수공사중 건설기계부문공사는 <u>건설본부</u> 보유건설기계로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보유건설기계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6조(건설기계사용 설계)<u>도로관리사업소</u>.....<u>도로관리사업소</u>.....</p>
<p>제7조(건설기계사용신청)①<u>건설본부</u> 보유건설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및 민간인(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건설기계사용신청서를 <u>건설본부장</u>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u>건설본부</u>·직영공사에 투입되는 건설기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임차인중 민간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건설기계사용신청서 외에 별표 1에 의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p>제7조(건설기계사용신청)<u>도로관리사업소</u>.....<u>도로관리사업소장</u>.....<u>도로관리사업소</u>.....</p>
<p>제8조(건설기계사용결정)①<u>건설본부장</u>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아 사용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건설기계사용승인통지서를 임차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인의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계약으로 이를 갈음한다. ②<u>건설본부장</u>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투입이 불가능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기관에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p>	<p>제8조(건설기계사용결정)①<u>도로관리사업소장</u>..... ②<u>도로관리사업소장</u>.....</p>

현행	개정안
<p>제9조(건설기계사용기간의 변경)①건설본부장은 임차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사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간의 변경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전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건설기계사용기간변경신청서를 <u>건설본부장</u>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제9조(건설기계사용기간의 변경)①<u>도로관리사업소장</u>.....</p> <p>②.....</p> <p>.....<u>도로관리사업소장</u>.....</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0조(건설기계공사의 도급시공)①<u>건설본부장</u>은 자체 도로유지보수공사에 지방이 없는 범위내에서 시·군의 차선도색공사 등의 도급시공에 응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u>건설본부</u> 보유건설기계로 공사를 도급 시공하고자 하는 기관은 공사실시일 이전까지 공사물량에 따른 도급공사비를 <u>건설본부</u> 보유건설기계로 시공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건설기계도급공사신청서를 <u>건설본부장</u>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u>건설본부장</u>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공사부분에 대한 도급공사 여부를 결정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생략)</p>	<p>제10조(건설기계공사의 도급시공)①<u>도로관리사업소장</u>.....</p> <p>②.....<u>도로관리사업소</u>.....</p> <p>.....<u>도로관리사업소</u>.....</p> <p>.....<u>도로관리사업소장</u>.....</p> <p>③<u>도로관리사업소장</u>.....</p> <p>④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11조(건설기계의 조종 등)①건설기계는 <u>건설본부</u> 소속 건설기계조종사가 조종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조종사는 건설기계조종일지를 작성하여 <u>건설본부장</u>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1조(건설기계의 조종 등)①… ……<u>도로관리사업소</u>… ……</p> <p>②… ……<u>도로관리사업소장</u>… ……</p>
<p>제12조(건설기계의 투입 및 회수)①(생략)</p> <p>②임차인이 작업조건 변동에 따라 사용중인 건설기계의 작업장소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u>건설본부장</u>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③(생략)</p> <p>④천재지변 또는 기후조건 및 조종사 교육 훈련과 공휴일 기타 공사시공상 일시적으로 건설기계를 가동할 수 없는 경우에는 <u>건설본부장</u>이 상황을 판단하여 당해 건설기계를 현장에서 일시반납, 회수시에는 미가동 봉인과 망실, 훼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제12조(건설기계의 투입 및 회수)①(현행과 같음)</p> <p>②… ……<u>도로관리사업소장</u>… ……</p> <p>③(현행과 같음)</p> <p>④… ……<u>도로관리사업소장</u>… ……</p>
<p>제14조(사용건설기계의 망실 또는 훼손)①임차인의 과실로 상용중인 건설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서를 <u>건설본부장</u>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건설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한 임차인은 <u>건설본부장</u>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p> <p>③<u>건설본부장</u>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으로부터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p> <p>1. ~ 3.(생략)</p>	<p>제14조(사용건설기계의 망실 또는 훼손)①… ……<u>도로관리사업소장</u>… ……</p> <p>②… ……<u>도로관리사업소장</u>… ……</p> <p>③<u>도로관리사업소장</u>… ……</p> <p>1. ~ 3.(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15조(사용료 구분 등)①(생략)</p> <p>②건설본부에서 자체 도로보수 공사와 재해긴급복구공사 이외의 공사에 건설기계를 사용하게 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이 정한 바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p> <p>제16조(사용료 산출기준)건설기계사용료는 별표 2의 건설기계사용료 산출기준표에 의한다. 다만, 건설기계사용료표에 명시되지 않은 건설기계의 사용료는 <u>건설본부장</u>이 정하여 운영한다.</p> <p>제17조(사용료 감면)①건설본부장은 별표 3에 의한 건설기계기본사용료가 지역실정상고가인 경우에는 건설기계가동증진을 위하여 건설기계 사용결정시 100분의 30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p> <p>②(생략)</p> <p>제18조(사용료의 산정)①(생략)</p> <p>1. 건설기계사용기간은 일과 월로 구분하고 기준가동시간은 1일 8시간, 1월당 200시간으로 하며 <u>건설본부장</u>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기준가동시간을 초과 사용. 다만, 건설기계운반용 건설기계는 제외</p> <p>2. ~ 3.(생략)</p> <p>②(생략)</p>	<p>제15조(사용료 구분 등)①(현행과 같음)</p> <p>②<u>도로관리사업소</u>.....</p> <p>제16조(사용료 산출기준).....</p> <p>.....<u>도로관리사업소장</u>.....</p> <p>제17조(사용료 감면)①<u>도로관리사업소장</u>.....</p> <p>②(현행과 같음)</p> <p>제18조(사용료의 산정)①(생략)</p> <p>1.<u>도로관리사업소장</u>.....</p> <p>2. ~ 3.(현행과 같음)</p> <p>②(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19조(사용료 징수)①건설본부장은 도 및 도산하기관에 건설기계를 임대 하거나 도급공사를 시공한 경우에는 임대 또는 공사완료후 건설기계사용료를 징수한다.</p> <p>②(생략)</p> <p>③(생략)</p>	<p>제19조(사용료 징수)①<u>도로관리사업소장</u>.....</p> <p>.....</p> <p>.....</p> <p>.....</p> <p>②(현행과 같음)</p> <p>③(현행과 같음)</p>
<p>제20조(사용료의 정산)건설본부장은 사용료가 기준가동시간에 초과하였거나 반납 또는 불가항력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시간 등에 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산하여야 한다.</p>	<p>제20조(사용료의 정산)<u>도로관리사업소장</u>.....</p> <p>.....</p> <p>.....</p> <p>.....</p>

관련 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0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⑥(생략)

제104조 (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도특별자치도에 한한다)·소방기관·교육훈련기관·보건지료기관·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05조 (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실·국·본부 등 기구의 설치) ①시·도 본청에 두는 실·국·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 사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실·국·본부 및 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③(생략)